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신장식 · 박은정
임호선 · 이해민 · 김재원
김문수 · 서왕진 · 진선미
최혁진 · 차규근 · 황운하
정을호 · 정춘생 · 백선희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, 생활 및 정서적·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·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,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자립

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”로 한다.

- ③ 국가는 제38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자립 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다.

제3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